

의안번호	2210074
의 퇴 인	허성무 의원
회 답 일	2025. 6. 30.
추계번호	25A2540

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1조(노후설비의 보수·보강·교체 등 안전조치)	- 노후설비관리자는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결과 노후설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노후설비의 보수·보강·교체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, 그 결과를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관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함(제1항) 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31조(노후설비의 보수·보강·교체 등 안전조치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안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가 등이 노후설비관리자의 안전조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
- 안 제31조제1항은 노후설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결과 노후설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노후설비의 보수·보강·교체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, 그 결과를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관리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함
 - 이러한 안전조치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비용을 지원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다만, 개정안은 노후설비의 범위와 노후설비관리자의 안전조치 등의 범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, 비용 지원 또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 있어 구체적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먼저, 개정안의 노후설비는 “노후거점산업단지 내 재질의 열화, 부식, 마모 또는 피로 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노후화된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”을 말함(안 제2조제7호 신설)
 - 또한, 국가 등의 비용 지원 대상인 노후설비관리자의 (정밀)안전조치 등과 관련하여 (정밀)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실시자의 자격 등 (정밀)안전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(안 제28조제3항 및 안 제29조제3항)
 - 참고로, 산업통상자원부의 노후거점산업단지 관련 주요 재정사업으로는 “산업단지환경조성” 사업이 있음

[표 1] 노후거점산업단지 관련 주요 재정사업 현황(산업통상자원부)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(내역)	2022 결산	2023 결산	2024 결산	2025 제1회추경
산업단지환경조성 (스마트그린산단촉진)	121,839	136,075	115,580	146,250
산업단지환경조성 (산업단지구조고도화)	188,000	161,413	276,617	230,228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